

# Montecito 상수 구역

# 체납 정책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해결안 2288 의 증거물 "A"

채택일: 2020년 1월 28일 업데이트: 2024년 6월 25일

#### 해결안 2288 의 증거물 "A"

#### Montecito 상수 구역

#### 체납 정책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몬테시토와 서머랜드 지역사회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적절하고 신뢰성있는 고품질 상수를 공급하는 것이 Montecito Water District의 사명이다. 본 이사회에서는 고품질 상수뿐 아니라, 현재를 비롯한 향후에 유익한 용도로 구역내 상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목적

Montecito Water District ("해당 구역")는 상수의 판매, 유통, 사용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납 계정 소유자에게 상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물법 § 31024]

2018년 9월에 제정된 "수도 차단 보호법"("WSPA")은 주민들이 수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절차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도시 및 지역 수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수도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WSPA는 200개 이상의 서비스 연결부에 물을 공급하는 공공수도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200개 이상의 서비스 계정에 물을 제공하는 도시 또는 커뮤니티 물 시스템으로서, 지구는 WSP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서면 정책은 WSPA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며, 지역구의 행정 조치와 절차를 열거합니다. 이에는 모든 고객 유형에 대한 통지, 요금 평가, 그리고 미납 계정의 징수와 서비스 중단이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지구의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의 조건에 따라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할 옵션을 논의하기 위해 지구는 (805) 969-2271로 전화로 연락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침 내용

### 체납계정:

여기에서 체납 계정은 월별 수도요금 청구서에 나타난 기한일 이내에 지불이 완료되지 않은 계정(별도의 지불 형태가 요청되지 않고)을 간주하고 있다.

다음 규정은 체납 계정의 수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 A. 소액 계정

\$50.00 또는 그 이하의 계정 잔액은 연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음 청구 기간에 이월 및 추가될 수 있지만, 이 정책의 섹션 D에 따라 미납 계정 잔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B. 별도의 지불 양식 요청

상수도 서비스 요금을 지불 기한이내에 지불할 수 없는 고객은 별도의 지불 양식을 요청하여 추가 요금 및/혹은 서비스 중단을 모면할 수 있다. 고객의 별도의 지불 양식 제출이 허용되면 해당 구역에서는 미지불로 인한 상수 공급 중단을 실시하지 않게 된다. 교육구는 요청과 관련된 상황을 검토하고 미지급 잔액 상각,

대체 납부 일정 및/또는 임시 연기/감액을 포함할 수 있는 대체 납부 방식을 승인할 단독 재량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지불. 지구는 청구서의 금액을 평가하고 미납금이 상환 또는 연기될 수 있는 기간의 횟수를 결정합니다. 다음 청구서로 연기되는 지불 형태를 채택할 경우, 할부 상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고객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면 지불 양식샘플이 첨부되어 있다. 할부 상환 형태는 기한일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체불액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국장이 허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할부 상환액은 정기월청구서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부과된다. 해당 고객은 할부 상환의 약정 조건을 준수하고 기한내에 지불하여 향후에 지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한다. 할부 상환에 따라 체불액을 지불하는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더이상 할부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 C. 기일 경과에 대한 상기 통지서

"기한 경과 알림"이라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알림이 제공된다. 기한 경과 알림 통지서는 고객의 청구 주소(서비스 주소와 다를 수 있음)로 기한일이 지난 다음 달 15일경에 발송된다.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소액 계정에는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기한 경과 알림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다;

- 고객의 이름 및 주소
- 체불액
-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불 또는 지불 준비가 필요한 날짜
- 체불액 결제 기한 연장의 신청 과정
- 청구서 검토 및 항소에 대한 탄원 절차 과정
- 연기, 감액, 별도의 지불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한에 관련된 절차

#### D. 연체료

납부기한의 다음달 <u>15일(주말,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u>수도요금 고지서에 명시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미지급 계정 잔액에 6%가 추가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연체료가 면제되지 않은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에서는 연체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E. <u>중단 관련 최종</u> 통지서

지불이 6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지역구는 물 공급을 중단할 것입니다. 지역구는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종료 전 최소 7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최종 중단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종 중단 통지는 문 앞에 걸린 형태로 서비스 주소로 배달되며, 계정에는 당시시행 중인 "기타 수수료 및 요금 일정"에 따라 최종 중단 통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i. 개별 미터기가 설치된 주택의 세입자/입주자에게 발송되는 통지서
  - 해당 구역에서는 상수 공급 계정의 체납 상태로 인해 상수 공급을 중단할 경우, 미지불로 인해 상수 공급을 중단하기 7일 이전에 세입자/입주자에게 최종 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입주자/세입자에게 체납 계정 액수를 지불하지 않고도 해당 구역의고객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 상수 공급 주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추후 발생되는 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상수 공급 해당 구역의 규정 및 규칙을 따르고자 할 경우에만 서면 통지서가 적용된다. 입주자/세입자가 체납 계정 지불금을 면제받으려면 임대 동의서 혹은 임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ii. 마스터 미터기가 설치된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입주자에게 발송되는 통지서

해당 구역에서는 상수 공급 서비스 계정이 체납되어 공급을 공급을 중단할 경우, 공급 중단 10일 이전까지 입주자/세입자에게 각 주택 문고리에 걸어두는 형태로 상수 공급 중단 최종 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통지서는 입주자/세입자가 체납 계정 액수를 지불하지 않고도 해당 구역의 고객이 될 수 있음을 알리지만, 이는 그입주자/세입자가 마스터 미터를 사용하고 그 상수 공급 주소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추후 발생하는 요금을 책임지며, 상수 공급 해당 구역의 규정 및 규칙을 따르고자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1명 이상의 입주자/세입자가 해당 구역의 규정에 따라 상수 공급 서비스에 대한 추후 요금을 책임지고자 하는 경우, 상수 공급 서비스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 세입자/입주자에 대한 선별적 형태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법이 합법적인 경우, 해당 구역에서는 상기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입주자에게 상수를 공급하게 된다.

## F. 24시간 고객 관리 전화

해당 구역에서는 미지불로 인해 상수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24 시간 이내에 적절한 선의의 노력으로, 해당 고객과 통화하여 상기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통지 수단은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예의 차원에서의 전화는 의무적이지 않으며, 지역구가 통지를 하지 못하거나 고객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미납이나 중단 지연의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G. <u>미지불로 인한 상수 공급 서비스 중단</u>

기일 경과 상기 통지서 및 상수 공급 서비스 중단 최종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 오후 5시까지 체불액 및 관련 금액을 해당 구역에 지불해야 한다.

지역구는 물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 미터기를 끄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그며, 계정에는 당시시행 중인 "기타 수수료 및 요금 일정"에 따라 물 서비스 연결 해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고객은 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기일 경과 상기 통지서 및 상수 공급 서비스 중단 최종 통지서를 발부받게 되며, 상기에 언급된 24시간 고객 관리 전화를 받게 된다.

#### H. 서비스의 재개

미납으로 인해 중단된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계속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당시 시행 중인 "기타 수수료 및 요금 일정"에 따라 서비스 재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역구는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재연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최소한으로는 모든 연체된 미납 금액과 관련 수수료의 지불을 받은 다음 영업일 종료 전에 서비스를 복원할 것입니다. 지역구 직원이 서비스 호출에 응답할 때는 "지불을 수집"할 수 없으며, 고객에게 정상 영업시간 동안 청구 부서에 연락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해당 구역 직원이 아닌 타인이 재개하거나 기관에서 허가를 하지 않고 재개되는 상수 공급 서비스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재개는 종료되고/혹은 상수도법에 따른 조치로 제한받게 된다. 무허가 재개로 인한 미터, 미터 상자, 미터 측정기, 인근 배관/부속품의 손상은 고객 책임으로 간주된다.

#### I. 청구서에 대한 이의 제기/항소

고객은 이사회의 방침에 따라 국장 혹은 국장의 피지명자가 작성한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본 항소 이행은 해당 구역 법령 82 조항 9에 나타난 절차를 따르게 된다. 항소 절차 이행 중 상수 공급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는다.

## J. <u>특정 상황</u>

다음 특정상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는 미지불로 인한 상수 공급 서비스 중단을 시행하지 않게 된다:

- 1차 진료기관의 증명서: 해당 지역내 입주자가 상수 공급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생명, 건강,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 복지 및 제도 법률 14088조 b부 1항 A호 약정사항에 따라 1차 진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정적 지불 불능: 해당 구역의 고객은 정상적인 청구서 기간내에 주택용 상수 공급 서비스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비, Medi-Cal,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보족적 소득 보장/주 보조금 지불 프로그램),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정 보족적 영양

Montecito 상수 구역 체납 정책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업데이트: 2024 년 6 월 25 일

프로그램) 지원을 받거나, 그 연례 세대 소득이 연방 정부 빈곤선 200 퍼센트 미만에 해당할 경우, 재정적으로 주택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 별도의 지불 양식 준비: 고객은 본 방침에 따라 할부 상환 동의서, 별도의 지불 기한서, 감액을 요청하는 계획서를 체결해야 한다. SOMEONE ELSE 123 Street Ave Santa Barbara, CA 93108 Service Address: 123 Street Ave Santa Barbara, CA 93108

RE: XX-XXXX-XX

Dear Someone,

This letter is to confirm your recent request to make monthly payments to pay down your bill of \$X,XXX.XX to bring your account current. Montecito Water District will, at times, allow a short extension to customers. With that said, we will extend you a twelve-month installment plan and offer a payment schedule as follows:

01/30/2020	Payment of \$151.00 + Jan Water Bill
02/27/2020	Payment of \$151.00 + Feb Water Bill
03/30/2020	Payment of \$151.00 + Mar Water Bill
04/29/2020	Payment of \$151.00 + Apr Water Bill
05/28/2020	Payment of \$151.00 + May Water Bill
06/29/2020	Payment of \$151.00 + Jun Water Bill
07/30/2020	Payment of \$151.00 + Jul Water Bill
08/28/2020	Payment of \$151.00 + Aug Water Bill
09/29/2020	Payment of \$151.00 + Sep Water Bill
10/29/2020	Payment of \$151.00 + Oct Water Bill
11/27/2020	Payment of \$151.00 + Nov Water Bill
12/30/2020	Payment of \$151.00 + Dec Water Bill

In the event that payments are not receive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upon terms, the District will apply a 6% late charge to your account.

Please sign below to indicate your agreement with the terms specified in this letter.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me between 8 am and 4 pm weekdays at (805) 969-2271.

(Current BM Name) Business Manager		
cc: (Current GM Name), General Manager		
I agree with payment terms as listed above:		
SOMEONE ELSE	DATE	